

# 2024년도 서울의료원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개 정 이 력

연번	년월	주요개정내용	작성자	검토	검토	검토	확인
1	2022.11	2023년도 서울의료원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최혁재	전자결재완료			
2	2023.01	도급업체협의체 어린이집 포함(9~10P)	최혁재	신교섭	유승원		송관영
3	2023.05	도급업체협의체 명칭변경 → 안전보건협의체(9~10p)	최혁재	(대결)			
4	2023.10	2024년도 서울의료원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박명선	신교섭	유승원	김혜정	이현석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목 차

1.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현황 .....	3
2. 안전보건경영방침 .....	4
3. 안전보건추진 방향 .....	4
4. 안전보건 관리체계 .....	7
5. 2023년 업무추진현황 .....	8
6. 2024년 주요 추진계획 .....	14

- ※ 첨부서류 : 1.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점검표  
2.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3. 주요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  
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관리

# I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현황

## 1. 안전보건관리 개요

### 목 적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서울의료원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관련법령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적용범위

-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서울의료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2. 현황

### 안전관리 대상 시설 현황

(2023년 10월)

사업장명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근로자 수	1,951명(월평균)
업종	보건업	주요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규모	지하 4층 / 지상 13층	대지면적	38,012.10㎡
건축면적	12,659.22㎡	조경면적	9,667.01㎡
연면적	105,041.37㎡	주차대수	805대

###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년 10월)

구 분	평균	2023	2022	2021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총 사고 발생건수	8.33	7	14	4
사망사고 발생건수	-	-	-	-
인명피해	계	7	14	4
	사망자 수	-	-	-
	부상자 수	8.33	7	14

※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고용노동부에 산재조사표 제출 건으로 표기함

### 서울의료원 산업재해율 목표(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23.06 기준)

	사업·업무명	2023년 재해율	2024년 목표재해율
1	산업재해율	0.39%	0.1%

## II

# 안전보건 경영방침

우리 병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대재해 제로 병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 2)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지침·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 3) 잠재된 유해·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 4)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병원을 만든다.

## III

# 안전보건추진 방향

비 전

서울시민의 안전병원

목 표

중대재해 제로

추진전략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보건  
협의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 수급업체 사업장 주간 점검 실시

산업안전  
보건교육

- 전 직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각 부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시간/년) 실시
  -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 근로자교육(2시간/월) 실시
  - 유해물질취급 등 근로자 특별교육(16시간) 실시
  - 신규입사자 대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실시

**순회점검**

- 순회 산업안전점검 실시
  - 일일 순회점검 : 매일(안전관리자)
  - 정기점검 : 2회/월(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특별점검 : 산업재해 발생 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근로자 작업 중지 제도” 운영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하는 일시적 간헐적 공사 안전교육 시행

**위험성  
평가실시**

- 모든 부서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 각 부서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건강장애  
예방활동**

- 건강검진 검진 및 사후관리 실시
  - 정기직원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후 건강검진
  - 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예, 걷기 앱 사용 등)
- 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예방활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실시
  - 근골격계 예방활동 실시(허리 및 손목보조기 지급, 손목보호 마우스 지급 등)
  - 연1회 압박스타킹 지급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운영
  - 분기마다 정기회의 개최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

-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
  - 혈액매개질환 및 기타 위험요인에 노출된 직원관리(상시/월)
  - 발생률 관리를 통한 개선활동 및 대책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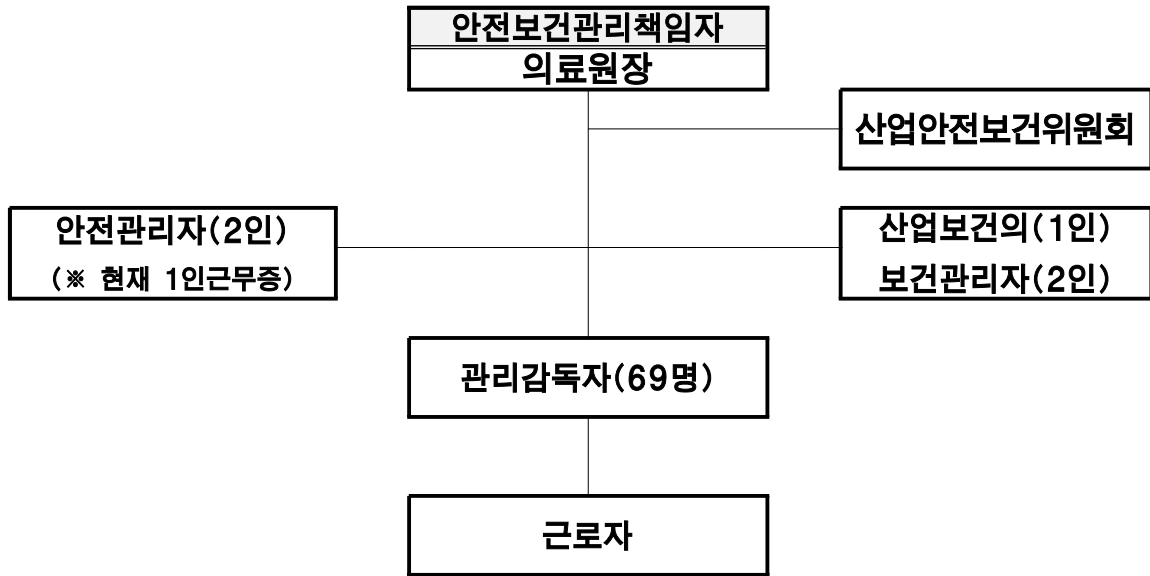
<p><b>감정노동보호 위원회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임상심리사의 감정노동보호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대상 1:1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li> <li>·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감정노동보호 예방 캠페인</li> </ul> </li> <li>- <b>고충 전문 상담창구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괴롭힘, 일반고충 등 상담 및 조사, 처리</li> </ul> </li> <li>- <b>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돌봄 힐링 프로그램 운영</li> <li>· 자연과 조우하며 심신의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p><b>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업환경측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 :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21에 해당하는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부서</li> <li>· 측정시기 : 상/하반기 년 2회 실시</li> <li>·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활동실시</li> </ul> </li> <li>- <b>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li> <li>·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li> <li>·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li> <li>· 관리대상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li> </ul> </li> </ul>
<p><b>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기별 1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li> <li>·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거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li> </ul> </li> </ul>
<p><b>안전보건경영 위원회 개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에 따라 반기별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위원(3인), 안전관리자(1인), 보건관리자(1인),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2인, 외부전문위원 2인으로 총 9인으로 구성</li> <li>·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li> </ul> </li> </ul>

# IV 안전보건관리 체계

## 1. 안전보건관리 조직

### □ 조직 현황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재난관리팀(2022년 1월)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업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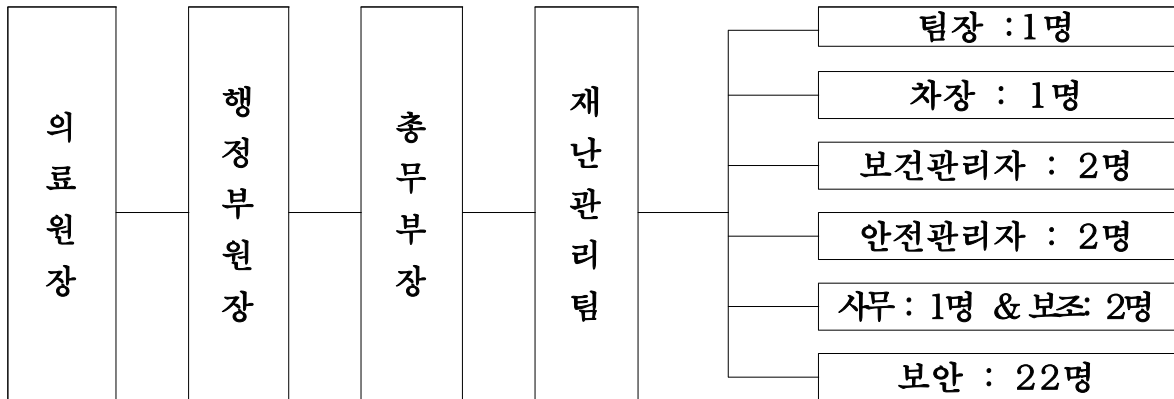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료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각부서의 부서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

구분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위원장	의료원장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따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보건의</li> <li>• 안전관리자 1인</li> <li>• 보건관리자 1인</li> <li>•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li> <li>•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li> </ul>



## 2. 재난관리팀 조직도

□ 재난관리팀 인력 및 조직구성체계도(정원 : 31명)



## V 2023년 업무추진현황

### 1.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현황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사고방지)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협의체 구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 12인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의료원장
  - 2) 운영책임자 : 총무부장
  - 3) 수급업체 사업주의 업무를 위임 받은 관리자 5인
  - 4) 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차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협의체 운영

구분	주기	관련법령	비고
정기회의	월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합동점검	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주간순회점검	매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 협의체 운영 결과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2. 2023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1,120건 (전년도 1,469건)

구분		위험도	건수	비율	개선사항
위험 등급	1~3	하	1059	94.5%	현재상태유지(허용가능)
	4	중	59	5.3%	현재상태유지 및 감소대책실행
	6~9	상	2	0.2%	즉시개선, 업무중지 후 감소대책실행
계			1,120	100%	

전체 재해유형 상위 5순위

구분(전년도 순위)	건수	비율
1순위 : 넘어짐 (1)	140	12.5%
2순위 : 감전 (4)	105	9.4%
3순위 : 부딪힘 (2)	102	9.1%
4순위 : 찢림 (7)	89	7.9%
5순위 : 배임 (5)	84	7.5%

감소대책실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 실행대상 : 위험도 “중” 이상(총61건)

○ 조치결과

- 감소대책실행 후 위험도 “하” : 60건 (개선율 98.4%)

- 감소대책실행 후 위험도 “중” : 1건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실행			
위험도	건수	위험도	건수	개선율	조치사항
중	59	하	58	98.3%	안전교육, 시설보완 등 조치로 위험도를 허용범위로 낮춤 감소대책실행 후에도 위험도가 높음, 예방관리실시
		중	1	1.7%	
상	2	하	2	100%	위 개선 외 보수실시 및 위험요인제거로 낮춤

○ 예방관리

- 신규예방관리대상 : 1건

연번	부서	재해유형	보완사항	예방관리
1	진단검사의학과	유해화학물질노출	유해화학물질(부식성)을 보관하는 전용 안전케비닛 구입 및 내부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시설의 보완	중,단기

### 3. 건강장해예방활동

2023년 직원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실시 결과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130조(단, 채용시 검진은 제외) 및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대상자 및 검진시기

구분		담당	계획 및 내용		예산	시행시기
직원 건강 검진	신규	인사운영팀	채용 <sup>1)</sup> 검진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비예산	채용시
		보건관리자	배치전 검진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별표22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의 배치 전	비예산	상시
	재직	보건관리자	- 일반·특수검진(정기, 배치 전·후 포함)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sup>2)</sup>		비예산	연1회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에 따른 사항

2)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따른 고위험부서만 정기적 검진 실시

검진결과

2023.10.31. 기준, 단위(명)

구분		검진 인원
신규	채용 시 검진	336
	배치 전 검진	353
재직(일반·특수포함)		1,448

\*입사 후 사직자 포함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결과

2023.10.31. 기준, 단위(명)

연도	구분	잠복결핵 검진인원	잠복결핵 양성자인원	활동성 결핵 의심 인원
2023년	고위험부서(재직)	795	15(1.88%)	-
	신규(채용 시 검진)	336	16(4.76%)	-

2023년 검진이상 소견자 사후관리 내역

- 검진결과 이상소견 시 문자 및 상담 실시 : 154건(\* 잠복결핵검진 포함)
- 2023년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예방활동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
  - 상반기 압박스타킹 지급결과

2023.10.31기준

구분	대상자	지급수량(개)
압박스타킹	전 직원	1,214

#### 4.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35조, 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함

나. 분기별 실시 : 1분기(3/24), 2분기(6/29), 3분기(9/21), 4분기(12월중 시행)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에 따라 직원의 안전·보건 사항 심의·의결함

#### 5.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

작업환경측정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예산 : 13,200,000원 중 9,900,000원 사용  
(※ 11월 하반기 측정 시 사용예정)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대상 : 13개 부서 포름알데히드 외 18개 물질 측정

- 측정 결과 : 불검출 또는 노출 기준 미만 측정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 22조

○ 점검 및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

-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시 유해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질에 대한 MSDS 교육실시 확인

#### 6. 2023년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활동 현황

2023년 전 직원 힐링 프로그램 참석 현황

2023.10. 단위(명)

참여인원	운영기간	운영장소
218	2023.04. ~ 2023.05. (총 5회)	원내(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

2023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석 현황

2023.10. 단위(명)

참여인원	운영기간	운영장소
120	2023.10. (총 5회)	원외(불암산 산림치유센터)

## 7. 2023년 직무 중 감염노출 현황

2023.10.31. 단위(명)

직종별	간호사	미화직원	응급 구조사	의무보조	의사	치위생사	임상 병리사	합계
인원	20	7	1	2	8	1	1	40

2023.10.31. 단위(명)

위험요인별	HBV	HCV	HIV	VDRL	모름	없음	합계
인원	5	6	3	9	10	33	66

- 노출시 직무 중 감염노출 시 조치사항에 따라 추후관리 시행
- 관련부서에 직무 중 감염노출 분기별 보고서 결재문서 공유
- 지표결과보고서를 그룹웨어에 게시하여 전직원 공유
-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직무 중 감염노출 예방법' 홍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직무 중 감염노출 감소 활동

## 8. 2023년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의무이행 현황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및 홈페이지 게시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재난관리팀)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반기 1회) 개선 절차 마련 :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입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2023년도 확정 예산 : 100,120천원
  - 2023년도 집행 예산 : 48,430천원(2023년 10월 말 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 수행위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필요조치(반기 1회)
- 중대산업재해 종합점검 등
  - 점검기간 :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상반기)
  -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하반기 예정)
  - 2023년 상반기 점검결과

연번	구분	점검결과				개선요망사항	비고
		점검 합계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점검	17	12		1		시정명령 없음
2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점검 (부서장 65명)	378	378			분만실 등 - "중량물 취급 주의" 안전표지 부착 101병동 등 - 전기선 정리	개선요망 사항완료
3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 (6개부서)	66	23		43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특별점검 결과

- 상반기 특별점검

- 1) 점검일자 : 2023년 5월 19일
- 2) 참석인원 : 의료원장 외 11명
- 3) 점검장소 : 1층 복도 및 전기실, 기계실
- 4) 개선사항
  - 1층 복도(카페) 천장 무드 등기구 철거
  - 전기실 안전수칙 확대 부착 및 인증제품 사용
  - 기계실 배관 보완 및 트렌치 설치 등

- 하반기 특별점검

- 1) 점검일자 : 2023년 11월 21일(예정)
- 2) 참석인원 : 의료원장 외 11명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인력배치 완료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필요시 개선방안 수립·실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급업체협의체 운영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조치 매뉴얼 마련,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 체계, 대응 순서도, 업무절차,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매뉴얼 수립완료

-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 2021.12.27부터 시행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계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약속하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최초업무 개시 전 해당업무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지도

- (도급·용역·위탁)업체 중대(산업)재해교육

교육대상	교육월	작업(공사) 명
(도급·용역·위탁) 업무 최초 개시 전 해당 업무 종사자	11월	-
	12월	-
	1월	-
	2월	영상의학과 디지털 에스션 촬영장치 설치공사
	3월	컨테이너 CT 이전설치 공사 외 6건
	4월	의학연구소 공기구 비품 폐기 및 의료장비 이전 외 3건
	5월	승강기 1호기 권상기 모터 교체 공사 외 3건
	6월	흡연부스 설치 공사 외 1건
	7월	기계실 배수로 트렌치 설치 외 금속공사 외 3건
	8월	외래환경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외 2건
	9월	심뇌혈관센터 혈관조영촬영장치 설치 공사
10월	구내식당 스팀배관 교체공사 외 3건	

1. 안전교육실시 : 개인보호구, 보호장치, 작업대상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등 조연  
2. 현장안전점검 : 공사기간 내 불시 점검

# VI 2024년 주요 추진계획

## 1. 안전관리업무 추진계획

구 분	항 목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 협의회	월회의	●	●	●	●	●	●	●	●	●	●	●	●	
	주간순회점검	●	●	●	●	●	●	●	●	●	●	●	●	
	분기합동점검			●			●			●			●	
산업안전 보건교육	정기교육	●	●	●	●	●	●	●	●	●	●	●	●	
	신규채용시	●	●	●	●	●	●	●	●	●	●	●	●	
	작업내용 변경시	●	●	●	●	●	●	●	●	●	●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	●	●	●	●	●	●	●	●	●	●	
	관리감독자 교육										●			
순회점검	일일점검	●	●	●	●	●	●	●	●	●	●	●	●	
	정기점검	●	●	●	●	●	●	●	●	●	●	●	●	
	특별점검	산재발생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	●	●	●	●	●	●	●	●	●	●	●	●	
위험성평가 실시	전 부서 대상		●	●	●	●	●	●	●	●	●			
	수시평가	산재발생 시												

## 2. 보건관리업무 추진계획

업무	항목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직원 건강 검진 및 사후관리	일반검진	●	●	●	●									
	특수검진	●	●	●	●									
	배치 전	●	●	●	●	●	●	●	●	●	●	●	●	
	배치 후	●	●				●	●			●	●		
	사후 관리	●	●	●	●	●	●	●	●	●	●	●	●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예방활동	●	●	●	●	●	●	●	●	●	●	●	●	
	유해인자조사				●	●	●	●	●	●	●	●		
잠복결핵 업무	검진및결과관리	●	●	●	●	●	●	●	●	●	●	●	●	
	신규 검진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른 물질안전점검	순회점검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	●	●				●	●	●	
	보호구 지급	●	●	●	●	●	●	●	●	●	●	●	●	
직원건강증진 활동	상비약제공	●	●	●	●	●	●	●	●	●	●	●	●	
	건강관리실운영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1/4분기		●	●										
	2/4분기					●	●							
	3/4분기								●	●				
	4/4분기											●	●	
순회점검	일일점검	●	●	●	●	●	●	●	●	●	●	●	●	
	정기점검	●	●	●	●	●	●	●	●	●	●	●	●	
	특별점검	산재발생 시												

※ 감정노동보호 및 직무 중 감염노출 업무 추진계획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수립함



### 3.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의무이행 추진계획

구 분	항 목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 점검	중대산업재해 종합점검					●	●					●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점검					●	●					●	●	
	중대시민재해					●	●					●	●	
	도급·용역·위탁 업체					●	●					●	●	
중대재해 예방교육	도급·용역·위탁 업무 최초 개시 전 해당업무 종사자	●	●	●	●	●	●	●	●	●	●	●	●	필요시 (현장점검)

### 4. 안전보건 사업계획

#### □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관련 서류는 각 부서 관리감독자 보관
- 안전·보건교육 세부 계획

구분	대상 부서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비고
정기교육	전부서	월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li> </ul>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포함
신규 채용시 교육		최초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li> <li>●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li> <li>●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실사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특별교육	유해물질 사용부서 등	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전부서	16시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의 업무</li> </ul>	

□ 순회점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22조 【첨부 1,2】 참고

구분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주기	보고체계/주기
정기순회 점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가 작업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조치의 건의	2회/월	의료원장/월
특별점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재해가 발생되거나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 - 재해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대책 수립	산재 발생 시	의료원장/ 산재발생 시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가. 개요

-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상황인지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
- 안전보건관련자가 작업을 중지시키는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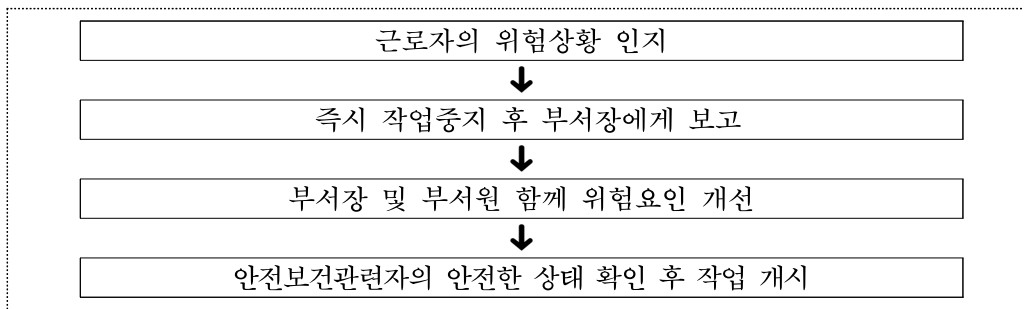
나.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다. 근로자 : 서울의료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

라. 근로자 작업중지 내용

-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 :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시설, 작업환경)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요인 개선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작업중지 요청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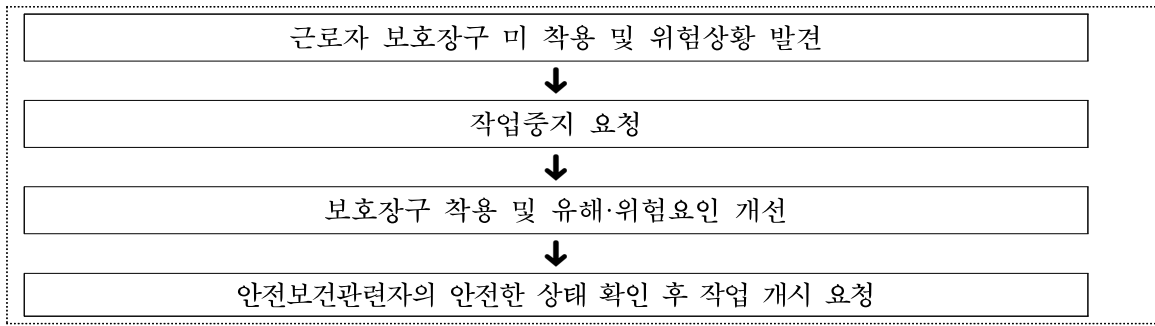
1) 작업중지 절차도



2) 작업중지 내용

- 근로자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시
- 산업재해 발생 시
-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 발생 시 휴식을 취함(필요시 의사 진료)
- 안전보건관련자의 근로자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  
(※ 안전보건관련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업무안전담당자)

- 작업중지 절차도



- 근로자 위험작업 내용

- 1) 건축공사 등 시설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 2) 근로자의 2인 1조 미작업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 사다리 작업 시
  - 무게가 15kg 이상 되는 중량물 운반 시
  - 6개월 미만의 신입근로자가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 작업 시
  - 기타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작업 시
- 3)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미착용
- 4) 폭염, 한파 특보 발령 시 외부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 내부 작업 유도
- 5) 옥상 및 난간 등 추락위험 구간에서 보호구 미착용
- 6)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미설치하여 절단 또는 말림 등 사고 위험이 클 경우
- 7) 용접, 용단 작업 등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시
- 8) 작업구간에 조도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 9)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미착용

○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적용대상

구분	공정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출입대장 작성여부	허가서 작성여부
1	저수조청소	B4F 지하저수조실	시수탱크 청소	년2회	○	○
2	중수저수조청소	B4F 지하저수조실	중수탱크 청소	년1회	○	○
3	저수조청소	PHF 고가저수조실	시수탱크 청소	년2회	○	○
4	중수저수조청소	PHF 고가저수조실	중수탱크 청소	년1회	○	○
5	슬러지 제거	B4F 폐수처리장 슬러지집수조	침전조 바닥청소	년1회	○	○
6	유지관리	B4F 폐, 중수처리장	일상점검	매일	○	×
7	약품처리	B4F 폐, 중수처리장	pH조절, 소독 등	주5회	○	×
8	유지관리	전문병상 오수처리시설	일상점검	주1회	○	×
9	유지관리	권역응급센터 감염폐수탱크	일상점검	매일	○	×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 위험성평가 실시

-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 평가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2024년 위험성 평가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계획 수립 및 교육		●	●										
체크리스트 및 평가				●	●	●	●	●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	

□ 건강장해예방활동

- 직원건강검진
  -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130조(단, 채용시 검진은 제외)
  - 나. 대상자 및 검진시기

구분	담당	계획 및 내용	예산	시행시기	
직원 건강 검진	신규	인사운영팀 채용 <sup>1)</sup> 검진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비예산	채용시
		보건관리자 배치전 검진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별표22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의 배치 전	비예산	상시
	재직	보건관리자	- 일반·특수검진(정기, 배치 전·후 포함)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sup>2)</sup>	비예산	연1회

-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에 따른 사항
- 2)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따른 고위험부서만 정기적 검진 실시

다. 검진 이상소견자 사후관리

- 검사 이상 소견에 대해 문자 및 전화 상담 실시
-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추후 관리

-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

구분	추후관리조치 판정	사후관리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특수보호구 착용	
3	추적검사	- 추적 검사 실시
4	근무중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직원 상담 실시
6	작업전환	- 관련부서에 사후소견서 결과 전자결재로 알림
7	근로금지 및 제한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과 보고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건강진단판이 안내)	
9	기타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예방활동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

나. 예 산 : 72,800 천원

-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 17,800 천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 5,000 천원
- 압박스타킹 : 50,000 천원

다. 활동기간 : 2024년 1월 ~ 12월

라. 예방활동계획 (※ 추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후 변경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실시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부서에 보조기 지급
- 업무 작업 전·후 스트레칭운동
- 정맥류 예방을 위한 압박스타킹 지급

□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37조

나.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에 따라 직원의 안전·보건 사항 심의·의결함  
(예,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의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 유해화학물질 정기점검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 22조

나. 점검 및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
-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
- 유해화학물질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시 유해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질에 대한 MSDS 교육실시

○ 작업환경측정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나. 예 산 : 11,000천원

다. 측정계획

- 측정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해당물질
- 측정기간 :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 측정방법 : 사업장내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확인 후 작업환경측정 기관 의뢰

## □ 감정노동보호 위원회 운영

### ○ 임상심리사의 감정노동보호 활동

#### 가. 직원 대상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추진대상 : 서울의료원 전 직원
- 추진목적 : 감정노동으로 쌓인 직원 스트레스를 1:1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회복 및 심리적 치유
- 추진기간 : 연중(1 ~ 12월)
- 운영방법 :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소속 임상심리사가 직원의 전반적인 성격특성, 적응능력, 정서상태, 정서 반응 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인관계 양상 등을 알아보는 개인 맞춤형 심리검사 실시
- 소요예산 : 5,000,000원(자체예산)

#### 나.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감정노동 종사자 현황 실태 조사

- 추진대상 : 서울의료원 전 직원
- 추진목적 : 감정노동 관련 직원의 스트레스 현황 파악을 통해 부서 사업방향 도출
- 추진기간 : 연 각 1회 (4주간 설문 조사)
- 운영방법 : (직무) KOSS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 실시  
(감정노동) 한국인 감정노동 평가도구 및 요구도 설문 실시

#### 다. 감정노동보호 예방 캠페인

- 추진개요 : 감정노동 존중 및 인식 개선, 감정노동 관련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안 홍보 등
- 추진기간 : 연 1회
- 추진내용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 소요예산 : 3,000,000원(자체예산)

### ○ 고충 전문 상담 창구 운영

#### 가.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창구 개설 : 감정보호노동위원회(20.9월)

#### 나. 고충 사안별 판단과 결정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세분화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 해결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직장 내에서 일어난 괴롭힘 관련 문제 해결
- (고충심사위원회) 인사담당 및 일반고충 등을 해결

#### 다. 사안별 직원의 고충이 신청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충사항 및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고 규정 및 내규, 지침에 따라 처리

### ○ 직원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

#### 가. 스트레스 돌봄 힐링 프로그램

- 추진대상 : 서울의료원 전 직원(약 200명(1회당 30명 이내))
- 추진목적 :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직원간 소통 활성화 도모,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 추진기간 : 3~4월
- 프로그램 : 시네마 콘서트, 네온사인 만들기, 가족 공예, 명상 등
- 소요예산 : 25,000,000원(자체 예산)

#### 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 추진대상 : 서울의료원 전 직원
- 추진목적 : 산림치유를 통해 직군 및 부서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간 업무 이해를 돕고, 직무 스트레스 감소 효과 기대
- 추진기간 : 9~10월
- 참여인원 : 200명(1회당 30명 이내)
- 프로그램 : 힐링 숲 걷기, 약초 족욕, 산림운동 등
- 소요예산 : 14,000,000원(자체예산)

#### □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

- 추진계획 : 직원 감염의 조기에방으로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 세부사항
  - 가. 직무 중 감염노출 : 혈액매개질환자에게 주사침자상, 피부 및 점막등에 노출된 경우
    - 전산 입력 후 유선보고→ 노출여부에 따라 감염내과 진료 → 검사 및 투약
  - 나. 기타 위험요인 : 접촉매개질환, 공기매개질환 노출 시
    - 공기매개질환(결핵 등) 노출 시 원내 방침에 따라 진행
    - 접촉매개질환 노출 시 노출상황, 관련위험요인, 노출정도 등을 파악하여 회의를 진행 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 및 처치·투약
- 사후관리
  - 가. 신규직원 및 전직원 대상 직무 중 감염노출 예방 교육
  - 나. 노출 발생시 노출자 대상 교육
  - 다. 결과보고 : 감염관리소위원회(분기), 감염관리위원회(분기)
  - 라. 관련부서에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1회/분기) 협조 공문
  - 마. 지표결과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전직원 공유
  - 바. 수가규정시행내규 제10조 1항 2호에 따른 진료비 감면

### 5. 중대재해 대응 추진 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 수행위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필요조치
- 중대산업재해 종합점검,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등
  - 점검기간 : 2024년 상·하반기 시행 예정
  - 매월 신규채용직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내용 : 안전계획수립 여부, 안전관련 인력편성 및 예산편성·집행,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선임 및 교육이수 여부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 실시
  - 계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약속하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 최초업무 개시 전 해당업무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 계약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한 점검 및 개선조치
    - 점검기간 : 2024년 상·하반기 시행 예정

## 6. 안전보건 예산계획

### □ 2024년 안전보건관리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항목	내용	금액	비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복리후생비	정맥류 예방용 스타킹	50,000	
	소모품비	근골격계 장애 예방활동	5,000	
	지급수수료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17,800	
건강증진병원사업	행사비	건강증진프로그램	5,00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의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지급수수료	작업환경측정	11,000	
	소모품비	보호구	1,405	
협회비	지급수수료	대한산업안전 협회비	760	
	지급수수료	전국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회	1,300	
	지급수수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비	250	
공기질 측정	지급수수료	실내공기질 측정	5,000	
건강관리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건강관리실 운영	1,200	
안전관리 교육	보수교육비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500	2인
	보수교육비	산업안전관리자 보수교육	500	2인
	보수교육비	보건관리자 전문화교육	600	2인
	보수교육비	산업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	980	2인
	법정교육비	관리감독자 교육	7,000	
	보수교육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60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비	참석수당	위원 참석 수당	600	
	운영진행비	위원회 운영비	200	
합 계			109,155	

※ 감정노동보호 및 직무 중 감염노출 예산은 각 해당부서에서 계획함



[첨부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점검표

점검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점 검 자		수급업체 책임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요망 사항	비 고
	양호	미흡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포함) 실시 및 기록보존(5년)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보존(5년)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보존(5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협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평가에 대한 의견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첨부 2]

# 안전 · 보건 순회점검표 (업무수행 내용)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당자	차장	팀장

점검자 : 안전관리자 (인) 안전관리자 (인)  
 보건관리자 (인) 보건관리자 (인)

순 회 점 검 사 항 [범례] 양호:(○) 미흡:(△) 불량:(X) 해당없음:(/)																	
분야별	1.기계,기구				2.전기,화공			3.환경,시설물						4.작업자			
구 분	가 스 사 용 시 설 상 태	폐 수 처 리 장 관 리 상 태	유 해 위 험 기 계 기 구 의 상 태	일 반 기 계 기 구 의 상 태	전 기 설 비 관 리 상 태	기 계 기 구 의 접 지 상 태	위 험 물 질 관 리 상 태  MSDS	정 리 정 돈 청 결 상 태	건 축 구 조 물 의 상 태	소 화 시 설 의 관 리 상 태	안 전 표 지 의 관 리 상 태	적 재 물 의 관 리 상 태	소 음 분 진 조 명 등 의 상 태	국 소 배 기 장 치 상 태	복 장 보 호 구 의 착 용 상 태	불 안 전 행 동 노 출 여 부	작 업 기 구 의 안 전 상 태
점검 결과																	
문제점								개 선 방 법									
업무 수행 내용																	

[첨부 3]

주요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

부서	위험요소	준수사항
병동 및 외래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li> <li>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li> <li>안전보건표지 부착</li> <li>적절한 보호구착용 등</li> <li>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유출 방지)</li> </ul>
	감염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액매개질환자 주사·채혈 시 안전바늘 사용</li> <li>바늘 사용 후 recapping 금지, 불가피한 경우 one hand technique</li> <li>손상성 폐기물 정리시 도구 이용</li> <li>감염병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리정돈 및 교육 실시</li> <li>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li> </ul>
영양팀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팀 및 뜨거운 물질 취급 시 화상예방 조치 (토시, 장갑, 앞치마 등 착용)</li> <li>뜨거운 액상 물질 이동시 용기 취급방법 조치</li> </ul>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시설을 청소 및 정비 할 때는 전원 차단</li> <li>고장 난 기계사용 금지</li> <li>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 부착</li> <li>신규직원 : 기계사용 방법 숙지</li> </ul>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베이어, 야채절단기, 식기세척기 등의 베어링 등 소음 발생장치 수리보수</li> <li>식기 세척 시 청력보호구(귀마개) 착용</li> </ul>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식 카 운반 시 충돌예방을 위한 운행수칙 준수</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 제거</li> <li>정리정돈 및 교육 실시</li> <li>관리감독자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li> <li>미끄럼 방지 조치(바닥청소 등)</li> </ul>
시설관리팀	기계설비 및 가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검사 실시(정기검사, 자체검사 등)</li> <li>방호장치 설치</li> <li>안전수칙 마련 및 숙지</li> </ul>
	유해물질, 소음, 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li> <li>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li> <li>안전보건표지 부착</li> <li>적절한 보호구착용</li> <li>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유출 방지)</li> </ul>
	기타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 제거</li> <li>정리정돈 및 교육 실시</li> <li>관리감독자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li> </ul>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	방사능피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감독자에 의한 자체관리</li> </ul>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li> <li>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li> <li>안전보건표지 부착</li> </ul>
공급실	EO gas, 소음, 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li> <li>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li> <li>안전보건표지 부착</li> <li>적절한 보호구착용</li> <li>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유출 방지)</li> </ul>
기타	근골격계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별, 업무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수칙 준수</li> </ul>

[첨부 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관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등)

기계/기구명	주요 방호조치 내용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격방지
회전기계	-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에는 덮개, 울 등
목재가공용 동근톱	- 날 접촉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
보일러	-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스위치
연삭기	- 덮개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
승강기	- 과부하 방지장치, limit switch,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
컨베이어	-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운반구의 이탈 방지 - 비상정지장치 설치
가스용기	- 전도위험 예방 -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법 제84조)

기계/기구명	위치	대수	안전인증	안전검사\유효기간	검사기관
압력용기	전문병동 1층 의료가스실	1	최초 설치 전 시행	21.09.11.~ 23.09.10.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지하 3층 의료가스실	2		21.09.13.~ 23.09.12.	
	지하 4층 의료가스실	1		21.09.13.~ 23.09.12.	

유해·위험요인 방호조치 준수

유해·위험요인	주요 방호조치 내용
전기기계기구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설치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과전류 보호 장치 설치 및 비상전원 사용상의 관리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방폭 설비
배선 및 이동전선	- 습윤 장소에서의 전선은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것을 사용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 경우는제외) - 낫을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정전작업	-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표시 - 작업 전 잔류전하 방전
활선작업	- 도전체의 충전전로 접촉금지 - 활선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 - 고활선 작업 및 특별고압작업 활선작업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사다리 등 작업	-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마련 및 교육 -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소음작업	- 소음 감소조치 마련 - 소음수준의 주지 및 교육 - 보호구 지급 및 착용